

1. 개정이유

도시·교통·건축 등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는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.(안 9.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9.2 중 “지양하도록 한다.”를 “지양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10.1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”를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9.2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(경관위원회, 교통위원회 등)가 있는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<u>지양하도록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 . 2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양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
<p>10.1 국토교통부장관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(대통령 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10.1 ----- <u>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마 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